

사법감시

Justice Watch Newsletter

격월간 「사법감시」 / 제6호 / 1996년 9월 / 등록일: 1996년 2월 23일 / 등록번호마-2428 / 발행인: 김중배

목 차

특집 ·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자	
부실변론의 예방 및 규제	2
법률구조, 서비스 개선의 관건	5
전망	
“무죄추정원칙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담당 김형태 변호사 인터뷰	9
모니터 리포트	
사법감시단의 범원방청 보고서	12
믿음직한 어버이 같은 법원을 기대한다	14
동향	
사법부의 뒤 처진 환경관	16
안기부 손에 달린 헌법상 권리	18
- 변호인들 접견신청 거부 · 제한 당하기 일쑤	
공익소송	
소비자 권리, 지키기 너무 어렵다	19
사법감시 통신문	
「미네르바」 제9호에 실린 '설문조사 유감'에 대한 항의서한	20
CyberLaw	
미국변호사협회 ABA 홈페이지	23
이것만은 고치자	
얼마를 공탁해야 하나?	24
- 형사법정의 합의금과 공탁금	
나의 사법 피해 사례	
성폭력에 사법피해까지 당한 어린 새싹	26
사법정의를 위해 나선 사람들	
검찰수사조서의 열람과 등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28
회원순례2 - 빼앗긴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때까지	30
단평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실명확인업무방해혐의로 검찰조사	13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대한 잇단 제동	17
부산고법, 영도구청장에 대한 재정신청 받아들여	27

특집 ·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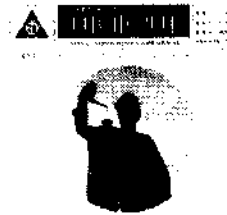
부실변론의 예방 및 대책

미국에서 법조윤리법에 위반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미국의 법원은 변호사들의 과오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본다. 허술한 변호사윤리강령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법률구조, 서비스의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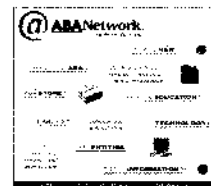
참여연대에서 마련한 신속하고 성실한 형사법률구조 방안 토론회, 당직변호사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YMCA 시민중계실, 국선변호사 등 법률구조의 각 영역의 노력과 개선책을 들어본다.

「미네르바」 제9호에 실린 '설문조사 유감'에 대한 항의서한



지난 「사법감시」를 위해 실시된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 연수원에서 발간되는 소식지인 「미네르바」에 '설문조사 유감'이라는 유쾌하지 못한 글이 실렸다. 이 글에 대해 사법감시센터에서 가져온 연수원장에게 보낸 항의서한의 전문을 신는다.

미국변호사협회 ABA 홈페이지



인터넷을 흘러 다니는 방대한 자료들 중 인권과 법률에 관련된 사이트를 차례로 소개한다. 먼저 미국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살펴본다. 'ABA STORE', 'Law Line', 'ABA Entitle' 등 인터넷을 통해 ABA를 본다.

“무죄추정원칙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을 2심에서 무죄로 이끈 김형태 변호사를 만났다. 무죄추정원칙을 확고히 한 이번 재판의 의미와,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날 수밖에 없었던 증거에 대해 들어본다.

부실변론의 예방 및 규제

미국의 법조윤리법 및 판례를 중심으로

김재원 /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 미국 변호사(워싱턴 D.C. 및 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는 국가가 엄격히 자격을 통제하고 있는 '전문직'이다. 따라서 사회가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변호사는 '전문가답게' 수행해야 한다. 이런 수준에 미달하는 업무수행이나, 법률전문가의 역할에 반(反)하는 행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법률가의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특히 법조인들은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사명을 부여받은 집단인 만큼, 이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는 직업윤리적 책임은 다른 직업들보다도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

법률서비스의 질에 관한 문제도 일반 상품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특히 법률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달되는 일을 하는 변호사에 대한 문제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권익에 관계된다. 모든 변호사가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변호사 비용이 소위 '성공보수'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무능력과 태만, 과오는 모든 법률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단히 간략하고 선언적인 '변호사 윤리강령'과 '변호사 윤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을 뿐, 별다른 논의가 거의 없었다. 간헐적으로 변호사 과오소송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10여 건에서만 과오인정 판결이 내려졌다. 변호사회에 최근 많은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데, 진정의 주된 이유는 과다수임료와 불성실 변론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85만 명이나 되는 미국의 경우, 수백 개의 조항을 가진 자세한 '법조윤리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윤리법은 법률가들에게 단순히 '윤리적'으로 혹은 '양심적'으로 행동하라는 식의 규제

이 아니다. 이 법규는 법률가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로서 당면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직업윤리에 비추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지,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그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윤리법에 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법조윤리법규는 법률가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하여 법률가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가답게'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법률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의뢰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 및 통제기능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이런 결과로 변호사 과오소송에 대한 많은 판결이 내려졌고, 이런 판례를 중심으로 학문적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세한 법조윤리규정이 정비되고, 그것이 잘 실행될 날이 하루 속히 오길 고대하며, 다음에서 논의하는 미국의 법규정 및 판례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한다.

불성실한 변호사의 행위유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변호사는 법조윤리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법률과오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둘의 적용을 다 받을 수도 있다.

전정이나 소송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은 '무관심', '태만', '부주의', '사기 및 횡령'의 네 가지로 흔히 분류될 수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그 대표적인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시효 만료 혹은 정해진 기일 이전에 소송행위를 하지 않음 /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 / 서류를 잘못 제출함 / 사실관계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지 않음 / 의뢰인의 전화, 서신, 면담요청 등에 신속히 대처하지 않아 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변경할 기회를 잃게 함 / 고의적으로 의뢰인을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김 / 의뢰인의 돈을 변호사의 계좌에 넣어 두거나 유용함 / 잘못된 법적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나 불이익을 줌

법조윤리법규에 위반되는 사례

미국의 법조윤리 규정 중 대표적인 것은 미국변호사협회(ABA)가 제정한 '법조책임규정(the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와 '법조직무규칙(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두 가지다. ABA는 입법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고, 변호사들을 징계할 실질적 권한도 없다. 하지만 미국 변호사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 협회가 마련한 규정과 규칙은 실질적인 징계권한을 가진 각 주(州)에 그대로 혹은 일부 수정하여 채택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법조윤리법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에서 부실변론에 관련된 규정과 판례만 소개한다.

무능력과 무성의

미국 법조윤리강령 6조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법률전문가답게 유능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조에는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열성적으로 의뢰인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능력 밖의 사건

변호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잘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혹은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렇게 판단

했어야 마땅한)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전에 의뢰인에게 알리고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불충분한 준비

비록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 속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면서 직무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다른 사건이 많아서 그 특정 사건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 불성실 및 태만

변호사는 사건을 성실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사건의 처리현황 및 경과를 "상세하고 신속하게(fully and promptly)"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의뢰인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변호사 비용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도 불성실
• 태만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과중한 업무량을 이유로 불성실
• 태만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사건 처리를 중단하거나 수입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고, 담당 재판부가 변호인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을 허락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책임 제한 및 면제 금지

의뢰인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변호사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조윤리법규는 변호사가 자신의 무능력, 불성실, 태만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계약)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동료 및 하급 변호사의 행위

법조윤리법은 법무법인(law firm)의 대표 변호사(partner)에게 고용된 하급 변호사(associate)들이 법조윤리법을 잘 지키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책임을 부여

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아닌 곳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감독 책임을 가진 변호사는 하급 변호사에게 그가 담당할 수 없는 사건이나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과중한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

Weinberg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책임을 동료 변호사에게까지 확대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자신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고 있던 다른 변호사에게 형사소송의 항소이유서의 작성과 제출을 부탁했는데,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법원은 비록 그 변호사에게 불순한 동기가 없었고, 그의 동료의 태만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6개월간의 정직을 선고했다. 법원은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직무를 위임했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지는 자신의 직무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과오 소송

변호사가 의뢰인의 대기인 겸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과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실변론에 관한 법률과오 소송은 대부분 ‘주의-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한다.

① 일반 변호사의 경우

그 지방에서 “평균적인 분별력을 갖춘(ordinarily prudent)” 변호사라면 가질 정도의 주의(注意), 실무처리 능력 및 법률지식, 근면 성실도의 이하라고 판단되면 책임을 질 수 있다.

Togstad 사건에서 법원은 고객의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사건관계 및 관련법률에 대해 잘 모른다면 의문점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조사하거나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변호사는 이런 조사없이 그릇된 법적 의견을 표시하고, 그것을 이유로 사건을 맡지 않겠다(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고 했었다. 법원은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해야 할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해 보지 않고 법적 의견을 말한 것은 주의-관리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았다(이 사건은 수임계약이 성립되지도 않은, 따라서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변호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② ‘전문’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자신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specialist)’라고 소개한 경우에는 ‘주의-관리’의 정도가 일반 변호사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아진다. 즉, 이 경우에 변호사는 보통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지식이나 기술, 기술훈련은 주의의 정도를 다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국선 변호인의 경우

법률구조 단체나 법원에 의해 임명된 변호사에게도 일반 변호사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예방 대책

법조윤리 위반과 법률과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대립된 접근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직접적 규제방법으로는 법원, 검찰, 변호사회, 법학교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독 및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 행위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경고, 재교육 이수명령, 공개사죄, 특정 사건 수임 제한, 정직, 면직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일반적인 불법행위법 및 계약법을 적용하여, 잘못이 있는 변호사는 법률과오 소송이나 중재 등을 통해 피해를 본 의뢰인(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아닌 경우도 있음)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런 소송을 당하거나 유능하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자연히 의뢰인이 줄어들어 도태될 것으로 본다. 

구독자가 되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료를 납부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사법감시』 편집팀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사법감시』와 구독카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구독료 : 1년(6회)/2만원

• **지로납부** 지로용지(통지서란)에 이류과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시중은행에 납부 (지로번호: 7615524)

• **무통장입금** 예금주 : 분혜진

국민은행 015-21-0808-184

제일은행 325-20-123107

상업은행 192-08-324269

농협 094-02-092853

법률구조 서비스 개선의 관건

지상중계 · 토론회 「신속하고 성실한 형사법률구조 방안」

법률구조제도'는 일종의 사법 차원의 복지제도로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선의 차원을 넘어 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그동안 법률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대단히 미흡하였다. 이에 지난 6월 26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신속하고 성실한 형사법률구조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법률구조에 대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와 토론을 요약해 실기로 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 파수꾼' - 당직변호사제도 - 발제 임영화 변호사

당직변호사제도는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 신장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93년 5월 서울지방법변호사회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현재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초회접견, 진상조사보고, 사건 선임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비록 최근들어 당직변호사상황실을 찾는 발길이 줄고 변호인들의 성실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자성이 일고 있으나 이 제도가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는 형사법률구조제도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분야로 꼽을 수 있다.

96년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등록자수는 390명(서울회 1900여 명의 20%선)이며 총접수건수는 4,120건, 선임 총건수는 658건이다. 1995년 1월부터 동년 10월까지 보통 월 100~150건 정도 접수되었으나, 최근에는 월 50~70건 정도로 감소된 상태이다. 접견장소는 경찰서 3,173건, 구치소 866건, 검찰청 34건, 대공분실 28건, 경찰청 7건, 기무사 12건이다.

제도 시행 후 3년 동안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사례를 대폭 감소시키고, 수사방법에 관한 발상전환을 촉구, 개선하는 등 제도적 성과가 있었음은 사실이나 최

근 제도시행 직후의 열기가 침체되고, 홍보의 부족과 변호사들의 성실성 부족으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당직변호사 등록의 확대, 현재 16~20%정도인 선임률의 제고, 독립된 변호인 접견실 설치 촉구, 외국인을 위한 변호대책 수립, 시민들에 대한 홍보방안 모색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의 협조와 후원 필요

당직변호사제도가 '인권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신뢰회복이다. 변호사들이 성실한 변론으로 전문가다운 모습을 가꿔나가야 함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변호사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수사단계에서 당직변호사실을 찾았다가도 소송에서의 선임은 전관 출신의 변호사에게 하는 일부 의뢰인들의 구태의연한 의식이나 '싼 게 비지떡'이라는 식의 높은 선임료가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편견은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각 분야(단체)의 독자적인 법률상담 시스템과 병행하여 법률상담의 사건에 따른 효과적인 분배와 시민편의를 위한 상징적인 통합안내전화번호, "가령 시민법률상담은 모두 117"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구조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와 통합운영을 위해

서는 시민의 후원모임과 기금조성도 필요하다.

132. 일단 세 번만 두드려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
도론 이시원 변호사

법률구조의 개념은 법 자체나 법률전문가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 즉 경제적인 이유나 현재의 지역 사정 또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소송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직 작용하지 않는 부분에 법률조력을 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법률구조제도가 여기에서 출발하며,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법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법률구조라고 본다.

일본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변협의 주관 아래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우리의 운영체계에서는 법률조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한정된 법률구조의 대상을 설정할 수밖에 없고, 법률구조의 현실적 접근방법도 영역대상자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공익법무관으로 인력부족 해소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대상자의 소득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변호사의 70% 가량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검찰과 법원이 소재한 대도시에만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매우 힘들다. 현재 시·군법원이 103여 개가 생겨 재판이 열리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농어민을 필수적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창단 이래 모든 영역의 무료상담과 민사, 가사사건의 소송구조활동을 벌여왔다. 소송구조활동을 제한적으로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변호사 인력의 절대부족이었다. 그러나 전담변호사의 인력부족은 95년부터 공익법무관 제도가 시행

된 후 차츰 해소되어가고 있다. 국방부의 이해를 구해 군에서 소요되는 인원을 제외한 사법연수원생들이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금년까지 공익법무관 100명 중 52명이 법률구조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개 지국 39개 출장소 중에서 8개의 출장소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이 1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

검찰에서의 독립 추진

민사, 가사 법률구조보다 화급한 형사사건에서의 구조활동을 벌이지 못한 또하나의 이유는 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 산하단체로 되어 있었던 데에 있다. 72년 법률구조협회였을 때에는 협회장이 곧 법무부 차관이었으며 전담 직원 40여 명에 그쳤고 법무부의 일부 업무로 취급되었으나 창단 이래 조직적인 독립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검찰청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을 얼마나 적절하게 변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실제로 지국과 출장소장이 아직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겸직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이 확충되면서 5~7군데가 독립된 사무실을 얻게 되었고 한해에 5개 이상씩 사무실 독립을 이루고 있다. 사무실 독립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적인 독립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인다.

이에 금년 6월 1일자로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형사법률구조를 시작했다. 민사와는 달리 완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나 과다한 신청을 막기 위해 대상자 범위를 민사에 비해 축소해서 실시하고 있다. 형사법률구조의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며, 그외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하는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다.

전담변호인력의 확보, 검찰에서의 인적, 공간적 독립 문제가 점차로 해결되어 나가고 있기에 앞으로의 법률구조공단의 과제는 수사단계에서의 형사법률구조와 대상자 범위의 확대, 법률구조의 사각지대인 행정분야와 관련된 국가상대 소송영역의 법률구조활동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4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정보통신

부와 협의해 132(일단 세 번만 두드리세요)전화번호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운동의 선봉
- 서울YMCA 시민중계실 -
도론: 신종원실장**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민중계실은 법률소비자운동의 영역에서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일을 해왔다. 법률과 시민생활, 법률과 소비자 문제의 상관성을 빠르게 인식한 시민중계실은 시민, 소비자의 생활사에서 법률문제를 보편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제반 법률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시민중계실에서는 제조물책임소송, 학습지 부당광고 등 집단소송 형식의 공동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형사법률구조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하였다. 기소단계 이후 무고사건, 무죄주장사건 등 현재하게 억울한 사건이나 공공성이 보이는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구조활동을 벌여왔고, 이는 당직변호사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벌인 활동이었다.

법률구조법인화, 양식도 없었다

시민의 권리 측면에서 법률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법률구조활동에 있어 국가의 큰 개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한다. 국가나 다른 민간단체의 활동보다는 현실적으로 변호사와 같은 전문인들의 직능단체에서 담당해 주어야 하며 변협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법률구조활동을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

시민중계실의 경우 법률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81년부터고 86년에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만들어졌다. 변호사 업무영역 내에서의 일탈, 부정적인 요소들이 의뢰인들에게 반영되어 시민중계실을 찾는 사람도 많았으나, 주로 소비자소송, 집단적 사안, 국가의 행정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왔다. 그 예로 아직 진행중인 사건으로서 작년 정신이상 세입자가 일가족을 몰살시킨 사건이 있다. 사건 발생 전 주인집 부부가 경찰에 네 번이나 신고를 하고 신변보호요

청을 했으나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결국 일가족 모두가 몰살당했던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이러한 행정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에 있다.

법률구조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법률구조법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법률구조법의 본질은 법률구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간의 법률구조사업을 촉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구조법의 대부분은 법률구조공단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시민중계실에서 법률구조법인 신청을 위해 법무부 인권과를 찾았으나 등록에 대한 서류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는 법률보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간의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시급

세 번째로 민간차원의 법률구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상품 자체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 같은 것에서 소송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소송비용 뿐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의 문제도 있는데, 도와주는 변호사들도 경유사건이 되면 상당한 세금을 물어야 하고 무료법률구조를 YMCA 회장 명의로 확인을 해주어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공익적인 집단소송의 경우 이러한 소송비용, 소송서류의 간소화, 무료수임의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의 면제 등 민간 차원에서의 법률구조가 활성화되기 위한 법률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

**형사법률구조의 기본
- 국선변호인 제도
도론: 김한주변호사**

형사법률구조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인정되는 것이 국선변호인 제도이다. 국선변호의 필요적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미성년자, 70세 이상 되는 사람,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 선임할 수 없는 때,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중죄인 경우이다.

전담 변호인단 운영으로 개선

최근 들어 국선변호인제도가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선변호인들의 불성실과 변론 내용에 대한 불만족 등이 비판의 주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이전에는 전체 변호사를 대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정·선정하였으나, 최근 성의 없는 변호사들도 국선변호를 맡아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법원마다 50명 정도의 변호인단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국선변호를 맡기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 후 자발적 가입의사를 표시한 변호인단이 국선변호를 맡기 때문에 변호를 하기 위한 열의가 높아져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수의 문제도 일률적으로 7만원,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차별화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건에는 보수를 더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그 시행이 미미하다.

보수가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예산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주의가 작용한다. 법정에서 국선변호를 하다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거나 검사와 다툰다거나 하면, 뭔가 검사나 판사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느낄 때가 있다. '국선변호인이 뭐 저렇게 열심히 하냐'는 것이다. 그런 인식이 일부 남아 보수현실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선변호제도는 기소된 후에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국선변호제도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 보아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소 전단계인 피의자 입건과 구속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속, 연행 직후에 국선변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바로 요청을 해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선변호의 요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외국인 노동자의 부분이다. 외국인도 언어상의 장애 때문에 놓아자나 심신장애자 못지 않게 자기변호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도 국선변호의 필요적 요건에 해당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법원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

국선변호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검찰의 소추 내용에 맞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변호인의 기본적인 역할보다는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국선변호 자체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순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국선변호인도 변호인이므로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방어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국선변호인의 자세 못지 않게 국선변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자세도 전환되어야 한다. 국선변호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할 수 있다'는 요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아 형사 피의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사법 통계청

서울지방법변호사회가 1994년 펴낸 「진정사례집」에 의하면 변호사의 불성실변론이나 과다수임료 요구 등에 대한 소송의뢰인의 진정이 날로 늘고 있다. 고객들을 보호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변호사윤리강령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비윤리적인 변호사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 1994년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접수 진정사건 유형

사건 유형	수임료 등 환불요구	불성실 변론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진정	사무직원에게 대한 진정	변호사와의 사전분쟁에 대한 진정	변호사 보수금 청구소송에 대한 진정	기타	합
진정 건수	101 (60%)	61 (37%)	24 (14%)	11 (7%)	8 (5%)	3 (2%)	5 (4%)	167건

자료 :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진정사례집」, 한 건에 복수내용 진정 가능, 총 진정내용은 213건 / 단위는 건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담당 김형태 변호사 인터뷰

“무죄추정원칙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96년 2월 24일 선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를 받은 이모씨가 지난 6월 26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재판장 강원구 부장판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사형에서 무죄로 사법부의 판단이 바뀌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2심에서 변론을 맡은 덕수합동법률사무소의 김형태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 이번 무죄판결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관심이 높은 만큼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었는데 판결의 중요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시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인권이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인권 같습니다. 정치범이나 양심수의 문제가 이전에는 매우 중요했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이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1년에도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다고 보면 우리 사회 누구나가 겪는 것이 형사절차인데, 검사가 판단하기에 좀 의심스럽다 하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된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태까지 우리 법원의 관행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정도만 검사가 증명하면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판결은 사람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법원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사람 목숨과 관련 없는 사기, 폭력, 절도와 같은 일반 사건에서는 좀 의심스럽다는 것을 검사가 밝히면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앞으로 이런

판결이 몇 개만 더 나오면 수사기관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기소나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언론에서는 마치 “죄는 있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풀려난다”는 식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변호

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지요.

몇몇 판사와 검사의 인터뷰 내용도 그렇듯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형사소송법 제일 앞장에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나 나온 말로 생각지 말고 정말 범인 같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아널 가능성이 있으면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범인이 이 사회를 걸어다니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인이 걸어다니면 물론 안 되지요. 그렇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 풀어주라는 것은 범인 아닌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조계나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고, 이번 판결은

그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누가 범인이나, 누가 진범이나 아니냐를 언론이 캐낼 수는 없습니다.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언론이 설불리 나서서 범인이다 아니다, 범인인데 풀려났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면 우선 범인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 세상에서는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지요. 누가 범인이나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면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나 검사, 변호사, 피고인만큼 그 지식을 완전히 취재한 다음에 판단해야 하는데, 제대로 취재도 안 하고 그런 식의 보도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이번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데는 변호인의 법의학 지식이 뒷받침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 법의학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나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의학 전반에 대해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망시간 추정에 대해서는 좀 알게 되었지요. 깊은 지식도 아니에요. 합리적인 의심, 끝없이 의심해 나가다보면 올바른 결론에도달할 수 있는 쉬운 과정이었습니다.

▶ 일본 법의학책도 참고하고 인터넷을 통해 법의학논문을 활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시반, 시강, 위음식물에 관한 것을 우리 사무실이석태 변호사가 서울의대에 가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복사를 해서 하나 책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서울의대 교수들한테 계속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분들은 법의학자들은 아니고, 가령 위음식물 하면 소화기 내과,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을 찾았지요.

법의학자라고 하면 각 분야에 있는 최신 의학자료로 계속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데, 18세기, 19세기에 나온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고로 한 법의학서는 1930년대에 일본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온도가 뜨거울 때는 더 빨리 시강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데도 우리나라 법의학자들은 그 상관관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강의 진행속도는 온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시체가 여름보다 더 뜨거운 42도 정도 되는 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통 17도, 18도를 기준으로 7~8시간 걸린다는 의견을 내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 죽는구나...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지요.

▶ 수사와 감정의 과정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이지요?

감정에는 전제되는 여러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틀려버리면 이후 감정도 모두 틀려버리는 것이지요. 그 전제는 법의학자들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침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라는 데 대한 경찰의 의견에 따라서 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전제가 있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법의학적 결과도 다 틀려버리는 것이지요. 컴퓨터를 무조건 믿는 것처럼 법의학자들의 견해를 모두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풋(input)이 틀리면 결과(output)도 틀리기 마련이지요.

▶ 1심과 2심에서 증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우유병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우유병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먹었느냐, 두 개를 먹었느냐가 사망시간 추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만 먹었으면 저녁에 죽었고 두 개 먹었으면 아침까지 온 것이라고 1심에서도 보았고, 우유병 하나가 우유가 좀 담겨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개의 우유병을 안 썼다는 것인데 제가 현장 사진을 잘 보니깐 우유병 하나는 젖꼭지가 붙어있고, 다른 하나는 분리되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끓는 물에

삶아서 마개를 막아 가져온 그대로 있었다는 것인데, 안 썼다면 젖꼭지가 분리되어 있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현장검증할 때 저는 다른 것은 안 보고 우유병만 봤습니다. 과연 아래에 우유 찌꺼기가 하얗게 있었습니다. 두 개를 먹은 것이지요. 먹고 대강 물로 씻어서 마개를 분리해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우유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말라붙어 있으니까 당시에는 더 많았을 텐데, 검사가 우유병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으면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유병 두 개는 사용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소하고 1심 재판부가 선고를 했으며,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수사과정에서 또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커튼줄의 경우에도 목에 남은 흔적을 보면 커튼줄 한 가닥으로 감아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커튼은 줄이 세 가닥에다가 서로 매듭이 되어 있었지요. 20cm 간격으로 매듭이 이어져 있는데 그걸 잘라서 목을 졸랐다고 하면 세 줄이 나오고 매듭이 목에 찍혀야 하는데, 매듭 흔적도 없고 한 줄이었습니다. 그것도 항소심에서 커튼 설치업자를 불러서 질문하다가 밝혀진 것입니다. 검사는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매듭이 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커튼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것이 우유병과 커튼줄 두 개로 밝혀지는 것이지요.

거짓말 탐지기도 그렇습니다. 탐지기를 다루는 사람 자체가 지극히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변호인들한테 “당신들이 범인을 풀어주는 것은 업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조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4시에 죽었다는 것에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출근한 것이 7시이니까 3시간 후에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결과에는 4시간 후에 나간 것에도 양성반응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 자기들이 판에 4시, 5시, 6시, 7시라고 썼

**컴퓨터를 무조건
믿는 것처럼 법의학자들의
견해를 모두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풋(input)이
틀리면 결과(output)도
틀리기 마련이지요.**

기 때문에 숫자가 4개이니까 4시간이라고 나온 것이라고 변명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질문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지요.

요약하자면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잘못된 수사관행에 확실하게 제동이 걸려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 변론’의 모범으로 소개되는 이번 사건의 변론은 다름 아닌 바로 성실변론이었다. 인터뷰 장소를 떠나 바쁜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충분한 얘기를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판결문과 변론요지서를 꼭 참고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다음은 2심 판결문의 결론 중 일부이다.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자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일관되어 견지하는 입장이다...”

기증을 기다립니다

- 각종 대.소법전
- 각종 판례집
- 한국법조인대관
- 각 연도의 사법연감, 검찰연감
- 사법관련 책자 등

구편이나 사용했던 것도 좋습니다
(수량제한 없음)

사법감시단의 법원 방청 보고서

형사소송규칙 잘 안 지켜진다

1996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 항소제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 이동철, 김종호 판사)의 재판을 방청하였다. 10시 30분까지 약 30여 건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항소심의 심리는 공소장에 의한 기소요지의 진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리에서 모두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은 물론 형사 소송법(이하 형소법) 289조에 명시되어 있는 진술 거부권을 피고인에게 고지해 주지도 않았다. 또한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조항(형소법 280조)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다. 거의 모든 피고인들의 한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오후 3시경 좌배석 판사가 졸고 있었다. 물론 날씨도 덥고 단조로운 형식이 반복되어 지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재판의 결과가 피고인들에게는 일생을 좌우할 큰 문제인 것을 생각하면 판사가 재판도중 졸다는 것은 불성실하고 무성 의한 태도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인 사건이 있었는데 판사가 같은 말을 3번이

나 반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통역사의 미능숙이 심하였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능숙한 통역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사법감시단 김삼원, 원우화〉

악재 소리 요란, 법원시설 개선 시급

96년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정병문)의 재판을 방청했다. 좁은 법정 안의 수많은 방청객이 들락날락하고 변호사가 오가며 내는 빼그덕 거리는 의자소리는 그야말로 나를 당황케 했다. 또한 마이크 시설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나 검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조명이 어두워 분위기가 무거웠고, 방청객들도 잠담을 하여 전체적으로 산만하게 느껴졌다. 공판에서 판, 검사들의 태도와 공정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사법감시단 서효진〉

정말 대통령이었던가?

7월 25일과 8월 1일 양일간 전직대통령 재판을 방청했다. 오전 6

시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표를 얻어 정식표를 받은 사람이 빠져야만 입장이 가능했다. 25일은 76번을, 1일은 74번을 배부받아 방청을 했는데 경비는 철저해서 몸수색을 두 번 받고서야 법정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와 방청객에게 목례를 하였으며 계속해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반성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매우 당당한 태도였다. 노태우 피고인의 얼굴은 매우 초췌해 보여서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지만 않는다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정호용 피고인은 정웅 증인에게 자신이 공수부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직접 보았느냐고 물었다. 정호용 피고인은 휴정이 되어 퇴정할 때마다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고 재판이 다 끝났을 때는 방청석에 있는 측근들의 인사를 받으며 손까지 흔들며 주었다.

정웅 증인에 대한 신문은 5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대여섯명의 변호인단은 증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몇 번씩 물어 증인을 짜증나게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측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판사가 변호인단에게 주의를 주었다.

역시 방청객들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쪽은 판사였다. 김영일 부장 판사는 변호인이 증인에게 반복하여 질문할 경우 답할 필요 없다고 하며 그냥 통과시키기도 하였고, 증인이 질문의 핵심을 잡지 못할 때는 질문을 쉽게 다시 해 주기도 했다. 대법정이라고는 하지만 법정의 좌석 수는 80석뿐이었다. 방청객의 구성은 광주유가족들과 피고인의 측근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피고인측을 위해 기도하는 보살들과 법학도들 몇 명이 끼어 있었다. 25일 오전재판 직후에는 방청객들 중에서 '정호용이가 제일 나쁜 새끼야'라는 말이 터져 나왔으며 오후 재판과 저녁 재판 사이에는 5·18 당시 아들을 잃은 여인과 보살이 육두문자를 쓰며 싸우기도 했다.

〈사법감시단 양승광〉

나오지도 않은 증인이 어떻게 증언을?

7월 25일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본 나는 다음 일차 신문들을 살펴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몇몇 일간지의 오보였다. 그에 따르면 25일 공판에서 정웅, 김재명, 최세창, 최화균 등 모두 4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간관계상 정웅 증인과 김재명 증인 2명만이 증언했을 뿐이었다. 또한 문장의 전후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을 쓴 나머지 독자들의 오관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기사도 많았다. 한정된

지면이므로 모든 사실을 전부 신문에 실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과 달리 표현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객관성을 잃지 않게 압축되어야만 할 것이다.

〈사법감시단 최태욱〉

정문에서부터 학생증 제시요구, 권위적인 경찰태도

1996년 7월 18일 법원 정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 2명이 지키고 있다가 다소 위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로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404호 법정에 가느냐고 수차례에 걸쳐 물었다. 어떤 사건을 보겠다고 결정을 하고 온 상태가 아

니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자꾸 404호 법정으로 가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에서 불쾌감을 느꼈다. 특히 학생증을 보고 종이에 신상을 적는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는 태도는 너무 권위적이었다. 결국 경찰이 강조한 404호가 보였다. 95년 방북한 대학생에 대한 재판이었다. 사건의 중요성 때문인지 방청객이 매우 많았지만 법정의 의자가 너무 적어서 대부분이 서서 재판을 지켜보아야 했고, 재판정 내에 무전기를 둔 경찰이 이곳 저곳에 있어서 분위기는 더욱 어지러웠다.

〈사법감시단 국영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실명확인업무방해혐의로 검찰조사

지난 4월 19일 참여연대 회원 김정자 외 2인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을 실명확인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였고, 지난 6월 12일에는 이에 대한 수사 촉구서한을 담당검사인 홍만표 검사에게 전달하였다. 고발 후 4개월이 지난 8월 21일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서울지검에서 있었다. 고발인 대표로 진술을 한 이대훈씨(36, 참여연대 사무국장)에 의하면 홍만표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였으며 고발인 조사가 늦은 이유를 해명하는 등 수사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고 한다. 홍검사는, 실명확인업무방해는 재정경제원에서 수사협조가 있어야 하며 계좌별 조사를 일일이 진행해야만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고발내용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고 새로운 것이 없어 고발인 진술을 수사 후로 미루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계열사 관계자의 소환조사뿐 아니라 피고발인 김석원씨에 대한 진술도 이미 받았음을 밝혔다.

이렇듯 고발인 조사가 지연된 이유를 친절히 설명하고, 소환조사 이전에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면밀한 수사를 토대로 한 엄정한 소추이다. 김석원씨가 여당의 현직 의원이라는 점 등에 의해 형평의 잣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믿음직한 어버이 같은 법원을 기대한다

이 글은 사법감시단이 일주일 동안 수원지방법원을 모니터한 후 토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위풍당당한 콘크리트 건물, 거룩해 보이기만 하는 재판장, 말을 건네기조차 어려운 법조의 관리들, 법원에 오면 떨리고 겁부터 난다. 평생 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운수 사나워 법정에 섰다. 재판장이 열심히 설명하지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렇다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맘 편하게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다. 결국 주눅이 들고 억하심정만 품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동안 법정에서 나왔던 서민들의 모습이다.

어린 시절 형과 싸우다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옳았다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소연한 기억이 있다. 아버지는 늘 자상하고 엄했다. 서민들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이 법조를 대할 수는 없을까. 일주일동안 이런 시선으로 수원의 법정을 지켜보았다.

먼저 형사법정, 피고인이 입장을 하자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주고 수갑을 풀도록 한다. 과거와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검사의 신문이 시작된다. 검사가 장문의 공소장을 한꺼번에 죽 읽은 후 피고인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반대신문하면 피고인의

답변은 전혀 달라진다. 죄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나 피해 정도에 대하여는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다. 재판장은 검사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변해 놓고 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가서 다른 소리하느냐고 피고인을 힐난한다. 우리의 형사법정에서 종종 있는 일이다. 이런 경우 다행히 변호인이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꼼짝없이 공소장을 그대로 시인해 버리는 셈이 된다. 결국 재판진행의 관행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쉽게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문제는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피고의 행위와 정상에 대하여 장문으로 읽어 나가면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한다. 아무리 그 내용이 그럴듯해도 그것은 당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변호사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 때문에 재판장도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다. 심지어 그 시간을 지루해 하면서 오히려 기록을 뒤적이며 딴 청을 부리기도 한다. 만일 검사와 변호사가 간단히 묻고 당사자가 자세히 진술한다면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기록에 의한 형해화된 재판

이 아니라 좀더 살아있는 재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시행되려면 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 요즘처럼 한 재판부가 한나절에 40건씩 재판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끝나면 재판장이 보충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재판장은 질문을 하면서 피고인의 잘못을 꾸짖고 타이르기도 한다. 그리고 그 질책에 재판장의 개인적인 세계관이 진하게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토로되고 있는 재판관의 세계관이 이문의 여지가 많아 있거나 재판장의 선입견과 예단을 드러내는 것일 때는 듣기 민망하다.

오후 증인신문에서는 증인이 제대로 소환되지 않아서 기일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았다. 송달에 애로가 있고 설사 송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나오기를 꺼려하면 강제로 구인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선 경찰관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때 형식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증인 구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구인장의 집행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정경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 민사법정의 모습이다. 무

엇보다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 법정에 출석해도 재판장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지난 번 재판 때 재판장이 증인을 신청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나와서 무조건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주장하고 싶은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다. 같은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당사자에게 재판진행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재판장이 딱하기까지 하다. 우선 재판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를 가급적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수원에 도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법정 밖에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안내판을 마련해 놓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예 법원정리에게 법률교육을 시키든지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을 정리로 임용하여 정리업무 외에도 방금한 재판장의 말을 설명해주거나 재판진행에 대

하여 조언을 해주는 업무까지 맡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오후의 민사법정,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어느 당사자는 두시부터 기다렸는데 두세 시간을 법정에서 기다리다가 불려나갔다. 그 때는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는데 재판장은 증인이 안 나왔다고 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한다. 당사자는 백이 풀린 채 허탈해 하면서 법정을 나간다. 그 동안 오후재판에서 변호사건, 당사자건, 증인이건 법정에서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다. 그 때문에 법원은 기일을 시간별로 지정하거나 변호사 없는 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등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온종일 법정에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는 증인의 출석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가 미리 확인하고 증인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우선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

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는 증인의 출석 여부에 대하여 알 길이 없다. 증인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기다리다가 재판장이 호명한 후에야 증인이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쓸데없이 법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미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동안 법원은 권력기관으로 재판과정은 국가권력의 행사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제 법조인이나 시민들 모두 법원도 대국민 서비스기관의 하나이고, 재판과정은 바로 이런 서비스제공의 과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때 서민들은 어린아이가 믿음직한 아버지에게 달려가듯 법원에 달려갈 것이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공동연구진이 사법10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의 위상을 찾고자 만든 책입니다. 연구진은 이 책에서 사법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헤치고, 외국의 사례를 풍부하게 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쟁점마다 좌담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모아 분명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참여필진 : 김재완(변호사), 박원순(변호사), 박은정(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이창원(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차병직(변호사),
한인섭(서울대 법학과 교수), 황승홍(서울대 법학과 박사수료)



• 박영률 출판사 발행 / 264쪽 / 값 9,500원 • 문의 전화 : 02-3673-4462, 팩스 : 02-3672-2478

사법부의 뒤 처진 환경관

자연보호를 '추상적 사유'로

지난 6월 19일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가야산 일대 48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주)가야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체육부가 국민정서와 자연보호 등 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유('추상적' 사유)를 들어 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 이후 가야개발측은 그동안 중단했던 골프장 공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각계인사 1백10명이 '가야산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 전면 백지화를 위한 1백10인 선언'을 통해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

설을 허용한 사법부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반대운동도 거세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가야산 골프장 건설은 고령군민들의 식수원을 농약으로 오염시키고, 국립공원인 가야산의 생태계를 파괴하며, 풍향의 변화와 독성농약 등으로 해인사에 보관중인 팔만대장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고령군민, 환경단체, 해인사 승려들이 강한 반대를 해왔던 것이다.

둘째, 이번 판결은 자치단체들이 세수확보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골프장건설사업을 더욱 부추겨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이번 판결은 국립공원을 보존하려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흐름에 조응하려는 행정

의 노력을 외면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산림파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골프장 건설 등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자연공원법 개정안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발효된 만큼, 이번 판결은 이러한 개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몇몇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한 지역의 식생이 파괴되고 5백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가야산이 황폐화되는 것이 어떻게 '추상적' 사유에 불과한 것인지, 과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식수와 농업용수의 오염 또한 '추상적'인 것인지를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환경권·행복추구권의 보호와 국립공원의 보존이라는 지상명제를 무시한 반환경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6공때에 골프장 건설허가를 마구잡이로 남발함으로써 인해 일어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형식적 법해석에 매몰되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원전반대시위 주도에 이례적 실행선고

또한 지난 7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식 부장판사)는 영광 원전 5,6호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다 한국전력에 의해 고발당한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 의장 박재완 신부(34)



사법감시 6호

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원자력 법위반죄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원전이 4개나 있는 영광에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폐수로 인해 서해안 생태계가 파괴되고 방사능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환경단체와 천주교계의 주장을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보장받으려는 주민환경운동의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다. 특히 검찰

이 불구속기소한 박재완 신부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천주교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박신부 등의 주장의 정당성이 그 행위와 형사법적 구성요건 해당성과 다른 처벌조건을 조각할 정도의 것이 되지 못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형 선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 오히려 거꾸로 작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여성·노동·환경문제와 관련

된 재판은 법관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결론이 좌우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법부의 보수적인 접근은 사회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의 사례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전 인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환경·핵문제에 대한 보수적 접근방식은 후세로부터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사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단평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잇단 제동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황경학 판사는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며, 술취한 행인의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모(16,종업원)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심사를 맡은 황판사는 "수사기록엔 검거동행보고서가 첨부돼 있는데도 김군이 15일 오전 0시30분쯤 사건현장 부근에서 붙잡힌 사실이 명백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이 경우 김군은 현행범이므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48시간 이내에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전영장이 청구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긴급구속이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속개시일시를 체포시점으로 보는 것이 통설인데,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긴급구속이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어도 불구하고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 등을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구속개시일시를 구속영장청구시로 늦추어 구속기간을 사실상 2일 늘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2에서 "...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날로부터 구속기간이 기산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본 규정의 취지를 살려 과거의 편법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60단독 이현섭 판사는 같은 날 서울 성북경찰서가 공업용너스와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박모군(16,무직) 등 10대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경찰이 박군 등을 13일 밤에 현행범으로 체포해 48시간이 지난 뒤 풀어주었다"며,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는 사실상 재구속요청이라고 판단되나 박군 등에게는 재구속할만한 중요한 증거나 혐의를 새로이 발견할 수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혐의를 찾지 못해 풀어준 용의자에 대해 별다른 수사진전이 없어 뚜렷한 혐의가 없는데도 사전영장을 신청하여 신병을 구속하려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수사 편의주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구속영장주의의 예외규정인 긴급구속이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사후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긴급구속이 폐지되고 긴급체포제도가 신설되며 또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 사후의 체포영장에 의한 통제가 없어지는 이상, 초동수사단계에서의 일선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신체구속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나온 판결은 비록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안기부 손에 달린 헌법상 권리

변호인들 접견신청 거부·제한 당하기 일쑤

지난 7월 초 외국인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했고 그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무하마드 칸수 교수가 북한의 정보원으로 밝혀졌다는 안기부 발표가 있었다. 칸수 교수의 부인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은 김한수, 박원순 변호사는 7월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안기부에 전화를 걸어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고 18일 세곡동 안기부 청사에 도착하여 접견을 기다렸다.

그러나 안기부의 태도는 의외였다. “칸수 교수는 종래 일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와 달리 매우 중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간첩이고 대통령에까지 보고된 중대한 사건이므로 국익차원에서 변호인 접견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변호인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들어 계속해서 접견을 불허하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밖에 없음을 알렸으나 이름을 밝히기도 거부한 수사담당자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포함하여) 변호인 접견을 허용할 수 없으며 안기부에서 조사 받는 동안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완강히 버텼다. 뿐만 아니라 이청신 대공수사실장은 수사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인들이 양해를 하고 접견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구속의 통지, 변호인이 아닌 자의 피의자와의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9조 2항이 무색할 지경이다. 칸수 교수의 변호인단은 국가안전기획부장, 안기부 이청신 대공수사실장, 칸수 교수 수사담당자(성명 미상)를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9조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상황이다.

바로 다음 날인 1996. 7. 19. 16:00경, 지난 6월 문정현 신부와 바르샤바 ‘남북2차회담’에 참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된 이승환(38)씨를 접견하기 위하여 차병직 변호사는 이씨의 부인 김미숙씨와 함께 안기부를 찾아갔다.

접견 신청서를 제출한 지 30여분이 지나서 안기부 직원이 승용차로 접견실까지 안내하였다. 그러면서 그 직원은 “매일 접견을 오니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변호사만 다녀가면 말이 달라진다.”라고 불만스럽게 내뱉었다. 접견실 입구에

서는 드디어 “접견 시간은 15분간이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차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에 시간 제한이 있느냐”고 항의하자, “제한이 없는 줄은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엄수바란다”고 대답했다.

접견이 시작된 지 정확히 15분쯤 되었을 즈음에 노크와 함께 직원이 들어왔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이었다. 차변호사가 “애기가 덜 끝났으니 나가주기 바란다”고 하자 불만스런 표정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겠다”고 하며 문을 닫았다. 10여분 정도 접견이 더 이루어지고, 차차 안기부 직원이 들어온 순간 그날 접견은 종료되었다.

수년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변호인 접견의 부당한 거부와 제한에 대하여 그 위법함을 거듭 확인해 오고 있으나 공안당국의 태도는 초연할 뿐이다. 피의자들을 참도 채대로 채우지도 않고 하루종일 조사를 하는 판국에, 변호인의 몇십 분 또는 한두 시간의 접견이 수사를 방해할 리 만무하다.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안기부에서는 수사의 용이함 저 뒷전에 머무르고 있음을 이번 두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 지키기 너무 어렵다

YMCA의 실리콘 제조물 책임 소송 사례

여성의 유방확대수술 등에 사용되는 실리콘 젤 주머니는 1962년부터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사용 초기에는 인체내 삽입물로서 유일하게 거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물질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뒤 실리콘 재질상의 문제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1,200명 가량의 미국 소비자들이 대규모 집단소송을 벌임으로써 실리콘 주머니의 부작용을 주장하는 제조물 책임소송이 시작되었다. 미국 연방법원은 모든 소송을 알라바마주 연방법원에 집중시키고 이를 집단소송 사건으로 하여 피해 소비자들의 소송을 단일화시켰다.

결국 미국 연방법원은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PL)에 의해 1994년 3월 29일 다우코닝, 유니온 카바이드 등 수십 개의 실리콘 제조관련 회사가 내놓은 총 42억 2천5백만 달러(당시 한화로 3조 4천억원)를 피해보상금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는 전 세계의 시술자들에게 보상 시행이 공고되고 드디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프로그램이 실시되게 된 것이다.(미국 이외의 외국인에게는 총 보상금액의 3%만 할당)

YMCA가 주장한 우리 나라의 소송과정

우리나라에도 실리콘 시술로 인한 피해자 수가 상당수 있으나 국내 성형 의료계는 자신들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일이 아님에도 침묵만 하고 있었고, 법조계 역시 변호사의 광고 금지 등의 제한 때문에 원고모집 등에 제한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사건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이에 YMCA 시민중계실은 이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되는 소비자 안전관련 사안이며, 특히 국내에서 관심이 되는 집단소송 및 제조물책임소송이었기에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체적 피

해자 접수 창구활동과 법률구조 활동에 착수하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94년 5월 12일부터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이미 심각한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거나 신체의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YMCA 공동소송 과정의 어려움과 성과

이 소송의 과정에서 집단소송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피해 당사자들이 재판과정에 직접 원고로 참여해야 하는 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비슷한 내용의 서류를 원고별로 일일이 작성·처리해야 했으며 원고 중 일부의 문제로 전체 소송이 지연되기도 하였고, 시간과 돈과 인력의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집단소송제도와 제조물책임법이 제정, 도입되면 그러한 어려움이 없어져 소비자가 권리주장을 하기가 쉬워지며, 무엇보다도 제품의 결함 유무 등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소비자에서 제조사 등에게로 전환되어 공익적 소비자 공동소송이 활성화되고 용이해질 것이라고 본다.

한편 95년 9월 제조회사인 다우코닝사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피해보상금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고, 제품의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 국내 의료계의 행태때문에 국내 1천5백여명의 피해구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소비자 피해 관련 최대규모의 집단소송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제정 논의가 분분한 제조물 책임을 묻는 소비자 소송사건으로서,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제조물 책임법 제정 흐름에도 기여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사법감시」 5호에 실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일간 신문에 기사화된 후 사법연수원에서 발행되는 「미네르바」(사법연수원 소식지 제9호, 1996년 6월 27일 목요일)에 '설문조사 유감'이라는 기사가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실 명의로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 대한 「사법감시」 편집위원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7월 20일 기재원 연수원장에게 보낸 서한의 전문이다.

수신 : 기재원 원장

발령 :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실 일동, 「미네르바」 편집인 신영철 교수

「미네르바」 제9호에 실린 '설문조사 유감'에 대한 항의서한

안녕하십니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1994년 9월 결성된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이 입법, 행정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분야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고 믿고, 참여연대의 중심 센터의 하나로 사법감시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사법의 영역에서도 국민주권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하며, 민주사법·책임사법·시민사법·참여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사법감시와 사법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사법현실을 단순히 지적·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국민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법조는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부정적 양상을 비판할 때조차, 우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머물지 않고 항상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각종 토론회와 자료집이 이를 잘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감시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우리는 「사법감시」를 격월간으로 간행하고 있으며, 1996년 6월 현재 제5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5호의 내용 중에는 21세기 법조계를 끌고 나갈 예비법조인으로서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해 사법현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공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의 일부가 일간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 연수원에서 내는 소식지 「미네르바」 9호 10쪽에는 '설문조사 유감'이란 '기획교수실' 명의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접하고 우리 단체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심각한 편견과 예단을 보여준 데 대하여 당혹감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몇 차례의 내부논의를 거쳐 분명하게 항의를 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유감'에 게재된 내용을 낱말이 비판하고 항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름도 괴상한 모 재야단체에서 27기 연수생들을 상대로 우편 설문조사라는 것을 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바 있는데"

우리는 표현의 천박함에 대해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 2년간 활동해오면서 여러 시민들과 학계, 언론계, 심지어 실무 법조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여 활동해온 단체를 이유없이 그 이름을 들어 '괴상' 운운 함은 법조인다운 사려가 결여된 표현이라 생각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법조인의 모든 활동을 실명화하여 공과를 분명히 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 단체에서 우리의 활동을 익명으로 한 적이 없는 데도 '모' 단체라 하여

불순한 어감으로 표현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아단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듯한, 일각에서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건전한 시민의 양식 속에 뿌리내리려는 노력을 한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간신문에 공표하기 위해 이런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과 법조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연수원생'의 시각에서 본 우리 사범의 현주소를 적시함으로써 자성과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론에 일부 내용이 공표된 것은 그만큼 미래의 법조인인 사범연수원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불순한 악명의 단체가 연수원생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펴고자 하는 것인 양 오도함으로써 우리 시민단체의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 설문 중에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도 있어 문제가 되었다"

설문조사는 특정 집단이나 국민전체의 의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 공인된 조사기법의 하나이며, 민주주의가 진전될 수록 설문조사가 활발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현재 전국민적 관심사인 5·18 피고인에 대한 재판 역시 그간 수많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의 해당 설문도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연수원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여론재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론에 재판부의 판결이 왔다갔다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야말로 담당재판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문이 왜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과 권력의 유착이 심한지 여부를 (연수원생들이) 어떻게 알아서 응답을 하였는지 법조선배들의 우려적인 목소리가 다수 전달되었다"



모든 국민들은 사법과 권력의 유착이 있는지 없는지 나름대로의 경험과 정보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조선배'들이 보는 측면도 한 단면일 것이며, 연수원생들의 판단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법조현실을 '아는' 선배의 목소리에 자기 의견이 위축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칫 법조선배들의 우려 속에 보이지 않는 권위로 예비법조인의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하는 미필적 의사라도 있다면, 그야말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범연수원생들은 일반 시민과는 다른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집단적 의지표출은 법조와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이 문장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응답내용도 매우 다양합니다. 아마도 기획교수실에서 우려하는 '집단적 의지표출'은 공동성명서나 집단 시위 같은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문조사를 가지고 집단적 의지표출 운운하는 것은 침소봉대이거나 솔뚜껑을 보고 자라인 양 놀라 예방책을 세우는 판단상의 우(愚)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범연수원생들이 일반 시민과 다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법조인 역시 그러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범연수원생들과 법조인들은 자신들에게

특권의식을 주입하려는 외부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을 함양하고 자기절제를 할 것이 요청되는 직책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에 투철하여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그것도 '다른 지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건전한 양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재야단체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 달성되면, 사법의 독립이나 법치주의와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은 무책임한 집단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구절은 우리 단체를 직접 겨냥한 것이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무책임한 집단 속에 우리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즉 '정치적 목적'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여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집단에 대해, '사법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겠다는 시민적 각성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시민의 사법 감시와 참여가 굳건해질수록, 사법독립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의 영향력 강화 기도가 분쇄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결코 정치단체가 아니라, 어떤 정치단체가 등장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민적 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무책임한 비판을 일삼는 집단이 아니며, 혹은 맹목적인 비판만 하는 조직도 아닙니다. 아울러 재야단체 일반을 이렇듯 무책임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러한 단체들의 설립취지와 활동방식에 대한 물이해에서 나오는 편향된 인식일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아마도 현직 판·검사이기도 할 기획교수실 소속교수들의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민주사회의 법조인이 가져야 할 상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함에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비판이 많다."

우리의 설문조사에서 315명 전원의 가정으로 설문을 발송하였고 이중 75명이 응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에 1명꼴로 응답한 사실은 우편조사 중에서 높은 응답율을 기록한 것이며, 이러한 사법연수원생들의

높은 참여의식과 시민단체에 대해 보여준 신뢰에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하지 않은 분도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을 것으로 믿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응답자의 수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연수원생들의 응답이 신중을 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법조선배들의 기우에 기인하는 것인지, 기획교수실의 노파심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데 대해 질책하는 듯한 어조는 매우 잘못된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 고언(苦言)과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법조인을 키워내는 산실로서 사법연수원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교수진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간에서 보여지는 시민단체 및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과 불이해,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누구보다 언행에 신중하여야 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편견이 교육생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품위에 어긋나는 표현을, 그것도 연수원생을 대상으로 한 소식지에 쓰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모든 매체에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반론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공언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글을 관련 당사자의 반론권 행사의 차원에서 「미네르바」의 다음 호에 실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앞으로 우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감시」지를 통하여, 그리고 법률관련 활동을 통하여 시민적 입장에서 우리 사법의 현실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내는 데 진력할 것입니다. 사법 100주년을 넘어서 제2의 재혁신을 이룩해야 하는 이 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며 국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수원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높은 식견과 열린 마음으로 최상의 교육을 해줄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별지 생략) 

미국변호사협회 ABA 홈페이지

이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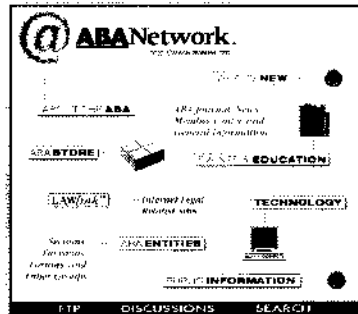
zicman@unitel.co.kr (이 난을 고정적으로 채워줄 필자의 통신ID이다.)

이 난은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 손쉽게 얻어내고 정리해 내는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다가오는 21세기와 전산화, 정보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도 않을 것이다. 법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컴맹이더라도 알아두면 좋을 정도의 정보를 실을 예정이다. 이 난은 국내 통신공간,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대강과 위치를 알려줄 뿐이다. 컴퓨터와 친숙하고 장비를 갖춘 사람은 소개된 정보를 직접 이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 위안을 얻거나 컴맹 탈피의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첫 출발로 ABA 홈페이지를 소개한다.

미국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홈페이지의 첫 인상은 매우 "미국적"이라는 것이었다. 법률의 특성상 한 웹사이트에 많은 정보를 담으려 하면 내용이 부실해지기 쉽다. 그런데 ABA웹사이트는 다른 법률 관련 사이트들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판례 등의 검색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는 회원과 일반인을 위주로 꾸며놓은 것이 실용적이었다. 앞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회단체들이 참고로 했으면 한다. 이러한 연결방식을 잘 이용하면 홈페이지의 내용을 알차게 꾸밀 수 있을 것이다.

ABA 웹사이트의 구성요소 중 가장 미국적인 것은 'ABA STORE'이다. 여기는 말 그대로 ABA가 운영하는 상점이다. ABA가 그동안 발행한 모든 간행물과 각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심지어 ABA로고가 박힌 티셔츠까지 구입할 수 있다. 간행물들은 법률관련 서적이 대부분이므로 특히 미국 법률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곳이라 생각된다.



'Event & Education'은 ABA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계획 및 상황을 선전하는 곳이다. 특히 ABA는 매년 일반인들의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법의 날"이라는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올해의 주제는 "미국 헌법 : 미국민의 이상"이다. 그리고 헌

법과 관련한 퀴즈도 내어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배려가 이채롭다.

법률관련 데이터베이스로 ABA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 'Law Link'이다. 여기에는 연방대법원, 연방순회법원, 그리고 법률대학원의 홈페이지들이 연계되어 있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쉽게 찾아 갈 수 있다.

'Technology'에는 법조인들의 windows 95, 워드 프로세스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경험과 평가 등이 실려 있다. 비슷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단순한 매뉴얼 이상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BA Entities'는 ABA에 속해있는 2,200여 개의 전문소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있는 해당위원회를 찾아가면 위원회의 저술활동과 위원회가 주최하는 세미나 등 활동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다.

ABA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곳이 'Public Information'이다. 매달 \$9~\$11를 지불하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Prepaid Legal Service'와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각 주별로 정리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직접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 정부기관, 사회단체 등을 알선해 주어 적절한 해결책을 일러주는 'Lawyer Referral Service'가 인상적이다. 

ABA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ww.abanet.org>이다.

얼마를 공탁해야 하나?

형사법정의 합의금과 공탁금

정주식 변호사

형사법정에서 드물게 보았던 일인데, 교통사고를 내어 재판을 받고 있던 구속피고인에게 담당 재판부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물었다. 피고인의 대답은,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과대한 금액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형편상 도저히 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담당 재판부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여 보라고 권유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실형선고를 각오하고 있던 피고인은 재판부의 배려에 진심어린 감사 표시를 하며 감격해 하였다.

당시 그 법정에서 공판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들도 그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교통사고나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속과 불구속, 집행유예 판결과 실형선고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느냐의 여부이다. 이는 곧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개인사에 있어서는 일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합의'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룰이나 예측가능한 수준도 없다. 합

의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며, 합의에 도달하는 시기도 가지각색이다. '합의'는 말 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벗어난 것도 가끔 있는 실정이다. 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가장 많이 하여 주는 것이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무료상담 실적은 아마도 세계 제1위일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들도 '합의'에는 일정한 기준도 몰고 없기 때문에 숙시원한 대답을 해줄 도리가 없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합의에 관하여 여쭙구니 없는 경험담을 갖고 있지 않은 변호사들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필자가 합의를 주선하였던 사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고위 공직자가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것이 있었다. 마침 피해자는 의사였고, 용케도 피해자의 형도 비노기와 전문의사였다. 다른 곳에 아무런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형의 도움을 받아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무시무시한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심인성 발기부전'이 하루아침에 치유될 것도 아니기에 그 고위 공직자는 별도리 없이 수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파악한 그 공직자는 전세금을 빼어 신사적으로 깨끗이 합의를 한 것이다. 만약 합의가 늦어질 경우 그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제약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물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어야 하고,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적정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에 관하여 시비를 논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예정되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를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의 무리한 요구에 의하여 형사상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양형의 재반 요소를 고려하여도 형사상 합의만 있었다면 석방될 수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여 형을 복역하여야 한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가해자가 상식과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 법원의 입장은 어떠한가? 법원은 합의를 하지 못하여

공탁을 하는 것을 일단 달가워 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만으로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에 법원이 쓸데 없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기우와 피해자측의 집요한 진정서 등이 부담이 되는 것도 이유가 아닐까 싶다. 범죄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행형(행형의 개별화)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즉 양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격과 사회적 심리적 상황은 물론 피고인에게 미치는 형벌의 효과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며, 공탁을 하는 경우 합의를 하지 못하는 사유도 심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실무에서 위와 같은 양형사유에 대한 심리가 부족한 것도 법원에서 공탁을 달가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피고인은 합의가 되

지 못한 경우에 공탁이라도 하여야 할 것인지, 공탁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곤혹스럽기 짝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다. 만약 공탁금의 액수가 적정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돈은 돈대로 버리고 형은 형대로 받아야 하는 처지에 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합의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심리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공탁도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된 금액이 부족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금액을 제시하여 추가 공탁을 할 것을 권유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법원 검사와 똑같은 소송의 주체이지 재판을 받고 있는 소송의 객체는 아니지 않는가.

법원이 피고인의 공탁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법원의 내부 기준에 맞으면 효력을 인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엄한 처벌을 한다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처럼 가슴 졸이며 공탁을 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재판장으로부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변호사들이 실무에 있어서 공탁과 관련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다 있기 때문이다.

양형의 모든 요소에 의하더라도 합의만 있었다면 석방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합의를 못하고 공탁금의 액수에 관하여 감을 잡지 못하여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이는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고인을 도와 주어야만이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의 사육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법정의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모 저모

- ▶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본부장 김창국)는 9월 4일 「현 부패사정기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부패방지법에 대해 세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성남 박사(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법사행정담당연구관)와 홍준형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 발제를 맡았고 이신범의원(신한국당), 추미애 의원(새정치국민회의), 차병직 변호사, 신대균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부패사정기구 이대로 좋은가?) 자료문의 : 이은경 간사 797-7413
- ▶ 지난 「사법감시」 5호에 실린 기소중지 착오에 대한 염치 없는 발행 기사에 대해 경찰청과 강남경찰서에 보낸 항의서한에 대한 답신이 9월 3일 도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감찰반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기소중지에 대한 수배에 착오를 일으킨 경장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였다.
- ▶ 9월 2일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원칙 확인을 환영한다」 사법감시센터 성명서 발표
9월 4일 「역사의 수레비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신한국당의 안기부 수사권확대방침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서 발표
9월 4일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서 발표

성폭력에 사법피해까지 당한 어린 새싹

전재덕 (경기도가평군가평읍)

1994년 1월 29일 오후 3시경 치아 치료차 K치과에 갔던 어린 딸이 “치과 의사가 혀를 아플 정도로 빨고 깨물었다”는 말에 놀라 가평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하고, 성추행은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자칫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도리어 당할 수도 있다는 법률자문만 받고 집에 돌아왔다. 그 후 2월 1일 치과 의사 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왜 그러느냐”고 묻자, 사과할 일이 있으니 만나달라는 것이었다. 하여 G 다방에서 만나보니 치과 의사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인 의사라는 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어린이를 상대로 성추행을 자행했다는 것은 아이의 부모이자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성인된 한 사람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치과 의사 이××은 다음 날 또 만나주기를 요구했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용서를 빌었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면 1시간 정도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때에는 이미 고소를 할 마음을 굳힌 후라 증인을 동석시켰고, 치과 의사 모르게 소행 녹음기로 녹음을 했다. 그리고는

딸아이의 주장과 그 의사가 용서를 빌어대는 내용의 대화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고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고, 담당 형사는 사건을 전제로 합의를 종용하였다. 더군다나 검찰에서 어린 딸을 조사하면서, “혀를 빨고 깨물 때 어떤 기분이었나?”, “선생님이 예쁘다고 살짝 뽀뽀만 한 것 아니냐?”, “부모가 시킨 것은 아니냐?”는 등 애매하고 의도적인 질문으로 이어갔으며, 필요 이상으로 몇 번 씩이나 불러내어 보기 싫어하는 피의자와 대질시키고 오랏줄과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들이 보이는 검사 조사실에서 조서를 꾸미게 함으로써 어린 내 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초를 겪었다. 검찰의 수사 태도는 그보다 더 심한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고소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소인을 괴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냉정한 조사를 하는가 싶던 의정부지청 최아무개 검사는 피의자와 합의하는 게 어떠냐고 했으며, 1심 재판은 질질 끌다가 94년 11월 29일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말았다.

치과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녹

음해 둔 증거도 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치과 의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본 증인과 그 내용을 녹음해 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그것이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고 무죄가 되는 것을 보고는, 일방적으로 치과 의사의 편을 들어주는 판사의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자 부모로서 그 의사의 가증스러움에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의사의 치과병원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였다. 하지만 그 의사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나는 항소까지 했지만 벌금 50만원에 처해져 전과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보내고 각종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얻은 사건을 1심에서 어이없게도 무죄를 판결하다니 우리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이××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났고 즉시 상고하였지만 1995년 9월 29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이 확정되었다.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을 막아 보겠다는 피해자 부모를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치과 의사도 벌금 50만원이라면 무승부라고 해야 할까?

사법부의 권좌에 앉아 정의와 불의를 가리는 판·검사들께서 공정한 심판으로 무승부가 아닌 정당한 법의 심판자가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랬고, 지금도 사법부가 그러한 본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법처리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과 고통은 필요 이상의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파렴치한 치과의사와 합의를 보아버렸다면 우리 가족은 단지 범죄행위의 피해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사법피해자라는 명

칭을 하나 더 달게 된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요근래에는 유달리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에 대한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폭행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사회여론이 환기되는 것은 비록 늦긴 했지만 무척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이런 사건이 우리 가족이 당한 피해처럼 부당한 사법적 처리로 매듭된다면 그것은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을 사법부가 방관 혹은 부추기는 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성폭력은 무거운 벌로써 다스려야 하지만, 특히 아직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보호받아야 할, 맑고 순수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한다. 아울러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저버리고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새싹들을 자신의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 신앙중학교 교장, 안산시의 유치원 원장, 그밖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적 폭력을 행사한 모든 파렴치범들은 단호히 최고형으로써 다스려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맑고 밝은 어린이들이 아무 걱정없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단 평

부산고법, 영도구청장에 대한 재정신청 받아들여

선거사법 첫 부심판 결정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선거법위반 현직 구청장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이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에 회부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6월 17일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박대석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57세)에 대해 상대후보 노모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정신청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는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이고 단지 73년에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과정(인사관리과정)을 수료했을 뿐인데도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면서 경력란에 마치 정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만 기재, 선거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15일 공소유지 변호사로 김상국 변호사를 지정하였는데, 김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7월 26일 박대석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공판에서 “중졸 학력의 박피

고인이 선거공고물에 정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라며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검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준기소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준기소절차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에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공소권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권의 행사가 자칫하면 검사의 독선 내지 자의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나이가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검찰권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의 형식에 의해 준기소 절차규정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형사소송법에서 준기소절차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6월(3차) 월례포럼 검찰수사조서의 열람과 등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 3차 월례포럼이 지난 6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부터 두 시간에 걸쳐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운영위원인 정재명 씨가 발표를 하고 참여자의 자유토론으로 진행하였다.

검찰 수사기록은 비공개?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확정전의 검찰 수사기록은 사실상 열람과 복사가 제한되어 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에 따라 검찰의 판단에 따라 열람 및 복사를 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확정전의 검찰 수사기록은 관행상 그 열람과 복사가 완전 금지되어 왔다. 분명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상위법인 대통령령 사무관리규정에 의하면 대외비밀이 아닌 경우이면 열람과 복사 등 대외적인 공개를 명하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기록은 대외비밀인 것인가. 물론 진정으로 대외비밀이어야 마땅한 것이 있다. 예컨대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는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보호도 중요하나 검찰수사조서의 비공개가 당사자들의 방어권 제한과 검찰조서의 진실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비공개는 부패의 온상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장 박경자씨는 자신의 위증고소건을 예로 들었다. 자신이 고소를 한 재판이 단순히 혐의 없음이라는 말과 함께 무혐의 판정이 나왔지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혐의 없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항고장을 쓰려

하여도 처음의 고소장을 다시 복사하여 제출하는 것이 되기 힘들었다고 한다. 박경자씨는 만약 자신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알 수 있었다면 좀더 실체적 진실을 밝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사례를 발표한 한 회원은 자신이 무고하다는 항변을 했지만 변호사도 없이 검찰에 구속되었고 재판 중에 자신의 수사기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아내 간신히 형을 모면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구속 전에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을 일 이었고, 만일 재판 과정에서조차 무심히 넘어갔더라면 실형은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비공개의 조작성은 예컨대 89년으로 기재된 것이 88년으로 기재됨으로써 공소시효가 변경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 정재명씨는 말한다.

과연 공개의 범위는 어느 선까지?

지금의 검찰보존사무규칙 그 규정의 내용이 매우 애매모호하다. 제22조는 열람등사의 제한의 이유가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으로 일관되어 있다. 즉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검찰에 재량권을 너무 준 것이다. 즉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식으로 말이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주관에 개입될 여지를 대폭 줄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토의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현 규정 하에서도 복사나 열람 등이 금지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정재명씨는 최근 언론에 검찰조서의 열람등사에 대

한 제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침이 만들어져 각 청에 하달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검찰청에 이 지침의 복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회신은 불가하다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검찰청 지침은 내부적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외부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록 열람 없이는 피의자 석방 없고 변호인 권리 없다

토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검찰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의 비공개는 기소독점주의나 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는 개인의 소추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아예 공소제기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배심원 소추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재정신청 제도가 있기는 하나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승엽 회원은 이러한 검찰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의 문제는 사실 구형법에는 없었던 것으로 새로 도입된 형법이 공소장일본주의(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택하면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에 적용될 일이지 피고의 방어권마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실상 증거 조사보다는 피해자 조사를 먼저하는 지금의 형법 하에서 검찰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피고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이승엽씨는 주장한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기록의 열람등사 금지 - 묵인하고 있을 수 없다

이번 포럼의 발표자이었던 정재명씨는 위의 '검찰지침 복사 청구'를 검찰이 거부한 데 대해서 행정정보공개청구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만약 이 또한 거부된다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다. 

검찰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못지 않게 중요한 권리이다.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 포럼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1. 검찰수사 조서의 열람 및 등사에 대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과다하게 보장하고 있는 관련 법규, 규칙 등의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2.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
3.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백한 사유와 관련자료를 공개하여 검찰의 처분에 항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미진한 점이 있어 항고하는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고 재항고 재기수사명령등 이 거듭 반복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나간다.
4.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는바 기록의 열람 등사의 권리를 부정하는 검찰의 관행에 대해 이의신청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을 통해 권리확보운동을 시작한다.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

굴절된 사법을 바로 펴고 사법을 사랑하는 진정한 벗이 되고하는 일반시민의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 사법정의가 만발하는 세상을 앞당기는데 뜻을 같이 하고 노력하는 130여명의 평범한 이웃같은 시민회원을 만날 수 있다.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은 매달 한 번씩 사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사법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공동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소송법을 만들고 입법화하는데 까지 나갈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에 참여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회원순례 · 이상기씨 빼앗긴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때까지...

말 수가 적지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굵은 일에는 늘 한 몫을 담당하는 이상기씨.

늘 어두운 표정이다.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원 중에 얼굴이 밝은 사람이 드물기도 하지만 이상기씨의 검은 얼굴은 불안하다기보다 뭔가 몰두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육군 대위로 전역하여 83년부터 국방부에서 군무원으로 일해오던 이상기씨는 92년 '직권면직인사 명령통보'도 없이 '처분사유설명서'만으로 해고당했다. 이것이 이상기씨의 길고긴 법정투쟁의 시작이었다.

이상기씨는 82년에 국방부의 군무원신규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국방부에 5급 행정군무사무관(후에

조사정보 군무사무관으로 직군 변경됨)으로 임용되었는데 주한미측 정보기관에서 합동군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외국기관 근무를 위해서는 휴직조치를 한 후 외국기관과 다시 고용계약을 맺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씨는 휴직원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휴직처분통보를 발급받지 못했으며 미측과 고용계약을 맺지도 않은 채 주한미측 정보기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해고당한 것이다.

한국공무원인가, 미국측 고용원인가?

군무 초기부터 군사기밀을 이유로 이례적인 요구를 해 온 국방부는 3년마다 '사직원' 양식을 배포하여 '사직사유'란에 '휴직기간만료'로 기입하게 하거나 임의로 날인하였으며 '휴직연장지위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또한 "공무원 퇴직금 및 연금 계산을 1월 1일부터 기산하며 이전의 퇴직금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퇴직금 수령 및 확약서'를 3년마다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매년 말 한달치 봉급분을 소위 퇴직금이라고 은행 온라인에 불입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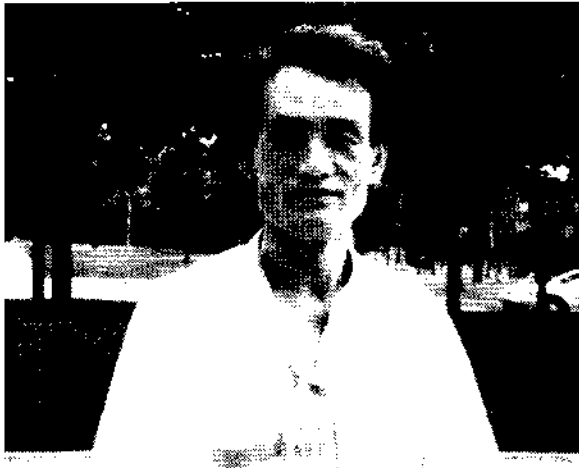
국방부는 이씨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의 보수를 미측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하고 있으나, '보수'가 아니라 미측의 사례비로서 '수당' 또는 '혜택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씨의 인사명령 기안문에는 자의로 휴직처분을 하고 휴직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파견명령을 했는가 하면, 그 인사명령 시행문에는 그에게 파견명령만 했다고 하며, 이런 경우 보수부담은 한국정부이므로 한국정부의 재정으로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미측은 국방부와 체결했다는 소위 '특수

건강한 사법은 참여하는 시민이 있을 때 완성 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운영됩니다.

- 법조인 자료실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리
 - 「사법감시」등의 매체에 실을 원고 작성
 - 「사법감시」,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원통신 등 우편발송업무
- 법률상담실 상담접수 및 사법피해자 지원활동



번역 및 전사지원·협정' 상해보면, 미측은 합동군부를 통해 자신들을 돕고 있는 군무원에 대한 사례비로서 "수당 및 혜택금을 주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는 급료명칭을 "수당 및 혜택금"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퇴직금과 연금의 수급권도 박탈당해

소송과정에서 국방부는 이상기씨 등이 사실상 미측 군무원이라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씨는 국방부에서 일간 신문에 모집공고한 공개채용에 정식으로 합격하였고 국방부가 발급한 정규군무원 신분증과 재직증명을 가지고 근무하여 왔다.

사직에 대한 권유와 이의 불복으로 이상기 씨는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연금의 수급권도 박탈당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씨와 그의 동료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군 내부의 문제일 뿐더러 군사기밀을 다루는 사람들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용어의 어려움과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로 인해 어느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좀처럼 내리기 힘들다.

이씨와 그의 동료 정재명씨는 일반인도 아니고 국방

부를 상대로 이런 복잡한 소송을 손수 서류를 작성하고 법전과 자료를 뒤져가며 수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소송, 정원무배정 및 정부조직법 관련 연금수급권 소급회복사건,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결정에 대한 사건, 휴직군무원과견명령 및 연금법상 재직기관 관련 연금수급권 소급회복을 위한 무효확인 소송, 국방부 관련자의 위증에 대한 건 등 수많은 행정, 민사, 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방부와 싸움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다.

고등법원에서 만난 이상기씨는 그날도 재판기일을 혼돈하여 변론기일지정신청을 내야만 했다. 법원식당에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고 기뻐하는 회원을 만나 함께 기뻐해 주는 이상기씨. 이씨의 국방부와의 끝없는 싸움의 끝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가 빼앗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기자의 마음은 착잡했다. **김민**

격월간 「사법감시」

통권 제6호 / 1996년 9월

등록번호 마-2428

발행인 김종배

편집인 박은정

편집자문위원 남영진(한국기자협회 회장)

심재우(교수, 고려대 법학)

유현석(변호사)

한상범(교수, 동국대 법학)

한승현(변호사)

편집위원 강기원(변호사)

박경자(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 회장)

박원순(변호사)

안경환(교수, 서울대 법학)

차병직(변호사)

한인섭(교수, 서울대 법학)

통신원 권규대(변호사/부천)

김익숙(변호사/부산)

김철준(변호사/수원)

나영명(전국병원노련 편집부장)

문종운(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조국(미국 버클리대학)

발행처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웅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 팩스 793-4745 / 통신 ID : PSPD